



평택고덕 A-39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811호 중 508호(전용면적 59㎡)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3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07.03)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고덕 A-39블록 기계약자와 그 세대원 및 해당블록에 청약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적극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품목 결정	계약	
					전자	현장
10.30(금)	11.10(화) (10:00~17:00)	11.11(수) (14:00)	11.16(월)~11.17(화) (10:00~17:00)	11.18(수) (10:00~17:00)	11.24(화)~11.25(수) (10:00~16:00)	11.26(목)~11.27(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LH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1층(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명리 4227-1)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0.11.24(화)~25(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견본주택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팽택고덕지구 A-39블록 : 공공분양주택 14개동 전용면적 59㎡이하 811호 중 508호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면적(㎡)	건설호수	기계약호수	금회모집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계)	당첨자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811	303	508	254			
A39	059.0000A	59A	확장	59.74	21.2905	6.1198	38.3835	125.5338	49.6125	244	132	251	125	
		59A1	확장	59.76	21.2977	6.1219	38.3963	125.5759	49.6292	204	108			
		59A2	확장	59.74	21.2905	6.1198	38.3835	125.5338	49.6125	24	13			
		59A3	확장	59.76	21.2977	6.1219	38.3963	125.5759	49.6292	56	24			
	059.0000B	59B	확장	59.97	21.3725	6.1434	38.5313	126.0172	49.8036	100	8	92	46	
	059.0000C	59C	확장	59.94	21.3618	6.1403	38.5120	125.9541	49.7786	100	11	89	45	
	059.0000D	59D	확장	59.96	21.3689	6.1423	38.5248	125.9960	49.7952	24	2	76	38	
59D1		확장	59.96	21.3689	6.1423	38.5248	125.9960	49.7952	59	5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팽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059.0000A에 해당하는 4개 타입 중 59A,59A1과 59A2,59A3의 경우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 위치의 차이가 있으니 팽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9A3, 59D1 타입 중 일부세대의 경우 실외기실의 비상탈출구로 하향식피난구가 시공될 예정이오니 팽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영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5%)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보증)
					계약시	('21.06.16)	('22.03.16)		입주시
059.0000A	59A	1층	기본형	276,860	27,686	41,520	41,520	111,134	55,000
			마이너스옵션	256,770	25,677	38,510	38,510	99,073	
		2층	기본형	292,240	29,224	43,830	43,830	120,356	
			마이너스옵션	272,150	27,215	40,820	40,820	108,295	
		3층	기본형	298,400	29,840	44,760	44,760	124,040	
			마이너스옵션	278,310	27,831	41,740	41,740	119,999	
		4층~최상층	기본형	307,630	30,763	46,140	46,140	129,587	
			마이너스옵션	287,540	28,754	43,130	43,130	117,526	
	59A1	1층	기본형	276,950	27,695	41,540	41,540	111,175	55,000
			마이너스옵션	256,630	25,663	38,490	38,490	98,987	
		2층	기본형	292,340	29,234	43,850	43,850	120,406	
			마이너스옵션	272,020	27,202	40,800	40,800	108,218	
		3층	기본형	298,490	29,849	44,770	44,770	124,101	
			마이너스옵션	278,170	27,817	41,720	41,720	119,913	
		4층~최상층	기본형	307,730	30,773	46,150	46,150	129,657	
			마이너스옵션	287,410	28,741	43,110	43,110	117,449	
	59A2	1층	기본형	276,860	27,686	41,520	41,520	111,134	55,000
			마이너스옵션	256,770	25,677	38,510	38,510	99,073	
		2층	기본형	292,240	29,224	43,830	43,830	120,356	
			마이너스옵션	272,150	27,215	40,820	40,820	108,295	
3층		기본형	298,400	29,840	44,760	44,760	124,040		
		마이너스옵션	278,310	27,831	41,740	41,740	119,999		
4층~최상층		기본형	307,630	30,763	46,140	46,140	129,587		
		마이너스옵션	287,540	28,754	43,130	43,130	117,526		
59A3	1층	기본형	276,950	27,695	41,540	41,540	111,175	55,000	
		마이너스옵션	256,630	25,663	38,490	38,490	98,987		

	2층	기본형	292,340	29,234	43,850	43,850	120,406	55,000		
		마이너스옵션	272,020	27,202	40,800	40,800	108,218			
	3층	기본형	298,490	29,849	44,770	44,770	124,101			
		마이너스옵션	278,170	27,817	41,720	41,720	111,913			
	4층~ 최상층	기본형	307,730	30,773	46,150	46,150	129,657			
		마이너스옵션	287,410	28,741	43,110	43,110	117,449			
	059.0000B	1층	기본형	273,500	27,350	41,020	41,020		109,110	55,000
			마이너스옵션	253,100	25,310	37,960	37,960		96,870	
2층		기본형	288,690	28,869	43,300	43,300	118,221			
		마이너스옵션	268,290	26,829	40,240	40,240	105,981			
3층		기본형	294,770	29,477	44,210	44,210	121,873			
		마이너스옵션	274,370	27,437	41,150	41,150	109,633			
4층~ 최상층		기본형	303,890	30,389	45,580	45,580	127,341			
		마이너스옵션	283,490	28,349	42,520	42,520	115,101			
059.0000C	1층	기본형	275,580	27,558	41,330	41,330	110,362	55,000		
		마이너스옵션	255,190	25,519	38,270	38,270	98,131			
	2층	기본형	290,890	29,089	43,630	43,630	119,541			
		마이너스옵션	270,500	27,050	40,570	40,570	107,310			
	3층	기본형	297,010	29,701	44,550	44,550	123,209			
		마이너스옵션	276,620	27,662	41,490	41,490	110,978			
	4층~ 최상층	기본형	306,200	30,620	45,930	45,930	128,720			
		마이너스옵션	285,810	28,581	42,870	42,870	116,489			
059.0000D	59D	1층	기본형	275,670	27,567	41,350	41,350	110,403	55,000	
			마이너스옵션	255,510	25,551	38,320	38,320	98,319		
		2층	기본형	290,980	29,098	43,640	43,640	119,602		
			마이너스옵션	270,820	27,082	40,620	40,620	107,498		
	3층	기본형	297,110	29,711	44,560	44,560	123,279			
		마이너스옵션	276,950	27,695	41,540	41,540	111,175			
	4층~ 최상층	기본형	306,300	30,630	45,940	45,940	128,790			
		마이너스옵션	286,140	28,614	42,920	42,920	116,686			
	59D1	1층	기본형	275,670	27,567	41,350	41,350	110,403	55,000	
			마이너스옵션	255,280	25,528	38,290	38,290	98,172		
		2층	기본형	290,980	29,098	43,640	43,640	119,602		
			마이너스옵션	270,590	27,059	40,580	40,580	107,371		
		3층	기본형	297,110	29,711	44,560	44,560	123,279		
			마이너스옵션	276,720	27,672	41,500	41,500	111,048		
		4층~ 최상층	기본형	306,300	30,630	45,940	45,940	128,790		
			마이너스옵션	285,910	28,591	42,880	42,880	116,559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등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계	침실1/드레스룸	침실2	침실3	거실/주방/식당	기타 (기계,전기 등)
59A	기본공사비(A)	69,068	1,599	845	845	3,323	62,456
	확장공사비(B)	76,512	3,798	982	982	3,894	66,856
	계약자부담액(B-A)	7,443	2,199	137	137	571	4,40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327	1,869	116	116	485	3,740
59A1	기본공사비(A)	69,543	1,599	845	845	3,323	62,931
	확장공사비(B)	76,864	3,797	982	982	3,894	67,209
	계약자부담액(B-A)	7,321	2,198	137	137	571	4,278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223	1,868	116	116	485	3,636
59A2	기본공사비(A)	68,670	1,599	845	845	3,323	62,058
	확장공사비(B)	75,190	2,596	982	982	3,893	66,737
	계약자부담액(B-A)	6,520	997	137	137	570	4,679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542	847	116	116	485	3,977
59A3	기본공사비(A)	68,557	1,599	845	845	3,324	61,944
	확장공사비(B)	75,236	2,596	982	982	3,894	66,782
	계약자부담액(B-A)	6,679	997	137	137	570	4,838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677	847	116	116	485	4,112

59B	기본공사비(A)	66,594	1,093	845	845	3,323	60,488
	확장공사비(B)	74,506	2,595	982	1,964	3,866	65,099
	계약자부담액(B-A)	7,912	1,502	137	1,119	543	4,611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725	1,277	116	951	462	3,919
59C	기본공사비(A)	66,449	1,093	906	906	3,323	60,221
	확장공사비(B)	74,826	2,595	982	982	3,894	66,373
	계약자부담액(B-A)	8,377	1,502	76	76	571	6,15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7,120	1,277	65	65	485	5,229
59D	기본공사비(A)	67,055	1,093	845	-	3,581	61,536
	확장공사비(B)	75,413	2,595	982	-	5,879	65,957
	계약자부담액(B-A)	8,358	1,502	137	-	2,298	4,421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7,104	1,277	116	-	1,953	3,758
59D1	기본공사비(A)	67,138	1,093	845	-	3,581	61,619
	확장공사비(B)	75,459	2,595	982	-	5,879	66,003
	계약자부담액(B-A)	8,321	1,502	137	-	2,298	4,384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7,073	1,277	116	-	1,953	3,726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시기	계약시(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시 별도안내 예정)	입주시(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공간선택(무상옵션) 안내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태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선택품목 결정기간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59A,A1,A2,A3	선택①	거실/침실2+침실3 분리	거실/침실2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선택②	거실/침실2/침실3 분리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9B	선택①	거실/침실2/침실3 분리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59C	선택①	거실/침실2/침실3 분리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안내 : 불박이장, 키큰장, 현관중문, 아일랜드 식탁,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에어컨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품목 결정기간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타입	유형	선택품목 (유상)				유/무상	비고
		옵션	합계 (단위:천원)	선택 시 납부조건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59A1 59A2 59A3	공간옵션	1-1 침실2+침실3	-	-	-	무상	1-1, 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미선택시 기본형 제공)
		1-2 거실+침실2	-	-	-		
	가구	2 팬트리 선반 월판넬형(거실)	-	-	-	무상	선택시 무상제공
		3 현관창고 선반(거실)	-	-	-	무상	선택시 무상제공
		4 현관 중문	880	88	792	유상	
		5 아일랜드식탁(주방)	1,398	140	1,258	유상	
		6 키큰장 팬트리형(주방)	926	93	833	유상	
		7-1 불박이장(침실3)	1,186	119	1,067	유상	공간옵션 기본형 및 1-2 선택시 선택가능
		7-2 자녀방 일체형 불박이장(침실3)	2,253	225	2,028	유상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주방가전	8 침실 통합형 불박이장(침실2+3)	2,665	267	2,399	유상	공간옵션 1-1 선택시 선택가능
		9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 59A, 59A1	2,731	273	2,458	유상	
		9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 59A2, 59A3	3,116	312	2,804	유상	
		10-1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10-1, 10-2 중 하나만 선택가능
시스템에어컨	10-2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11-1 거실+침실1	3,468	347	3,121	유상	공간옵션 기본형만 선택가능	
	11-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768	577	5,191	유상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9B	공간옵션	11-3 거실+침실1+침실2	4,835	483	4,352	유상	공간옵션 11-1 또는 11-2 선택시 선택가능
		1 침실2+침실3	-	-	-	무상	미선택시 기본형 제공
	가구	2 팬트리 선반 월판넬형(거실)	-	-	-	무상	선택시 무상제공
		3 현관창고 선반(거실)	-	-	-	무상	선택시 무상제공
		4 현관 중문	858	86	772	유상	
		5 아일랜드식탁(주방)	1,398	140	1,258	유상	
		6 키큰장 팬트리형(주방)	926	93	833	유상	
7-1 불박이장(침실2)	956	96	860	유상	공간옵션 기본형만 선택가능		

59C	주방가전	7-2 자녀방 일체형 불박이장(침실2)	2,048	205	1,843	유상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공간옵션 1 선택시 선택가능
		8 침실 통합형 불박이장	1,953	195	1,758	유상	
		9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3,336	334	3,002	유상	
		10 창고 선반(침실1)	583	58	525	유상	
	시스템 에어컨	11-1 하이브리드 쿨탑(가스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11-2 하이브리드 쿨탑(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공간옵션	12-1 거실+침실1	3,150	315	2,835	유상	공간옵션 기본형만 선택가능 12-1, 1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공간옵션 1 선택시 선택가능
		12-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970	597	5,373	유상	
		12-3 거실+침실1+침실2	4,651	465	4,186	유상	
	가구	1 침실2+침실3	-	-	-	무상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선택시 무상제공 선택시 무상제공 공간옵션 기본형만 선택가능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공간옵션 1 선택시 선택가능
		2 팬트리 선반 월판널형(거실)	-	-	-	무상	
		3 현관창고 선반(거실)	-	-	-	무상	
4 현관 중문(거실)		825	82	743	유상		
5 아일랜드식탁(주방)		1,270	127	1,143	유상		
6 키큰장 팬트리형(주방)		926	93	833	유상		
7-1 불박이장(침실3)		1,107	111	996	유상		
7-2 자녀방 일체형 불박이장(침실3)		2,285	229	2,057	유상		
8 침실 통합형 불박이장		2,665	267	2,399	유상		
9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2,973	297	2,676	유상		
주방가전	10 창고 선반(침실1)	569	57	512	유상		
	11-1 하이브리드 쿨탑(가스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11-2 하이브리드 쿨탑(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시스템 에어컨	12-1 거실+침실1	3,037	303	2,734	유상	공간옵션 기본형만 선택가능 12-1, 1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공간옵션 1 선택시 선택가능	
	12-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666	566	5,100	유상		
	12-3 거실+침실1+침실2	4,458	446	4,012	유상		
59D 59D1	가구	1 팬트리 선반 월판널형(거실)	-	-	-	무상	선택시 무상제공 선택시 무상제공 6-1, 6-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현관창고 선반(거실)	-	-	-	무상	
		3 현관 중문(거실)	858	86	772	유상	
		4 아일랜드식탁(주방)	1,270	127	1,143	유상	
		5 키큰장 팬트리형(주방)	926	93	833	유상	
		6-1 불박이장(침실2)	1,146	115	1,031	유상	
		6-2 자녀방 일체형 불박이장(침실2)	2,443	244	2,199	유상	
		7 파우더룸&드레스룸(침실1)	3,091	309	2,782	유상	
	주방가전	8 창고 선반(침실1)	641	64	577	유상	
		9-1 하이브리드 쿨탑(가스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9-1, 9-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9-2 하이브리드 쿨탑(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661	66	595	유상			
시스템 에어컨	9-3 하이브리드 쿨탑(보조주방에만 적용) (하이라이트 2구)	159	16	143	유상		
	10-1 거실+침실1	3,087	309	2,778	유상	10-1, 10-2, 10-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0-2 거실+침실1+주방	4,497	450	4,047	유상		
10-3 거실+침실1+침실2+주방	5,982	598	5,384	유상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쉘,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물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쿠포,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내 선택가능하며, 동 기간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자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 자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자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5%, 추후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 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II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 적발 시 계약해제).
 -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 가능
 - ※ 단, 평택고덕 A-39블록 기계약자와 그 세대원 및 해당블록에 청약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 불가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 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대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산정 기준일**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소유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일정 및 방법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신청일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주소
2020.11.10(화)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선택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주택형별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금회 공급대상 주택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II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 고	접 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품목 결정	계약	
					전자	현장
10.30(금)	11.10(화) (10:00~17:00)	11.11(수) (14:00)	11.16(월)~11.17(화) (10:00~17:00)	11.18(수) (10:00~17:00)	11.24(화)~11.25(수) (10:00~16:00)	11.26(목)~11.27(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LH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아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필수	추가 (해당자)	서류	발급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무주택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계약이후 무주택 확인 시 계약취소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1,000천원) + 선택사양품목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자금조달계획서(LH 청약센터 게시 예정)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 등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16:00까지 전자서명 완료 필요)**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전자계약 체결시 30일 이내 계약자 본인이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7.03) 당시의 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마감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등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현장계약의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되며, 전자계약 체결의 경우 개별 신고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39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태왕이앤씨 (504-81-89073)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세감리

4.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안내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27-1 ■ [코로나 19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평택고덕 A-39블록은 주택전시관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www.lhgd-a39.co.kr)을 운영하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자에 한해 당첨서류 제출기간 내 주택전시관 관람을 시행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입장 시에는 발판소독, 마스크착용, 체온체크 등 예방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 (PC · 모바일)	분양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PC] www.lhgd-a39.co.kr [모바일] m.lhgd-a39.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평택고덕 A-39블록 주택전시관 : 031-656-4995 (10:00 ~ 17:00 토, 일 제외)

평택사업본부